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6조제1항제1호”를 “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법 제27조의2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7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 제27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인 법인을 말한다.

제5조 중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법 제27조의2제3항제3호”로 한다.

제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1항”을 “법 제10조제1항 또는 법 제27조의2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여신전문금융업”을 “여신전문금융업 또는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으로 한다.

제6조의15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법 제2조제5호나 목의”를 “법 제19조제7항 제4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용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되지 않도록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치를 할 것
2. 법 제19조 제7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이외에 신용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을 것

제6조의15제3호를 삭제한다.

제6조의18부터 제6조의20까지 및 제7조의4부터 제7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18(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기준)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5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6조의19(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자본금)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 가맹점”이란 3만개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한다.

제6조의20(변경등록) 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변경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의 명칭
2. 등록을 변경하려는 내용
3. 등록을 변경하려는 사유

제7조의4(가맹점모집인의 준수사항)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는 모집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모집하려는 신용카드가맹점(이하“가맹점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자신이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자임을 알릴 것
2. 가맹점신청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할 것

3. 가맹점신청인에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약관과 법 제18조 제4호의 사항을 설명할 것

4. 법 제27조의4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할 것

5. 가맹점을 모집할 때 알게 된 가맹점신청인의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할 것

6. 제3자로 하여금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을 대신하게 하거나 위탁하지 아니할 것

7.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6조의2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

제7조의5(가맹점모집인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여야 한다.

② 부가통신업자는 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모집인은 정기적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을 방문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의 영업여부 및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신용카드업자 또는 부가통신업자는 가맹점모집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6(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요건 등) 법 제27조의 제3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협회의 장은 부가통신업자 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등록한 신용카드 단말기에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제19조의15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8. 제6조의19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19조의18 및 제19조의1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18(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 법 제54조의4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의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의 제출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4항에서 정하는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의19(신용정보보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가 법 제54조의5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신용정보보호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의2제1항에 제7호의3 및 제7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에 대

한 조사

7의4. 법 제27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신청의 수리,

등록여부의 통보, 변경등록 신청의 수리, 변경등록 여부의 통보 및

등록말소

제23조의2제1항제10호 중 “법 제54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및 같은 항”

을 “법 제54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 같은 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법 제54조의4제3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

자의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서 접수

제23조의2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13호 및 제14호로 한다.

11. 제7조의5제4항에 따른 가맹점모집인의 위반사실 신고 접수

제23조의2제2항에 제1호의2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회 부여, 가맹점모집

인에 대한 등록취소 및 통지

3.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가맹점모집인의 변경등록

제24조제1항제1호 중 “제10조 및 제14조의3”을 “제10조 및 제14조의3,

제16조의3 및 제27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14조의4”를

“법 제14조의4, 제16조의4”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제1호의2 및 제5호

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에 따른 등록 및 등록의 취소 등에 관

한 업무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별표2의 제9호 및 제10호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업무정지기간	과징금의금액
9. 여신전문금융회사등(신용카드업은 제외한다)이나 부가통신업자가 제16조의3을 위반한 경우	법 제58조제3항제4호	-	5천만원
10. 여신전문금융회사등(신용카드업은 제외한다)이나 부가통신업자가 제27조의4, 제54조의4 또는 제54조의5를 위반한 경우	법 제58조제3항제4호	-	5천만원

별표4와 별표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3조의2

제10호에 따른 개정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제2조(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18의 개정

규정에 따른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의 제출은 이 영 시행 후 개

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인인 자가 법 제1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제1항제1호	250
나.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제1항제1호	120
다. 법인인 자가 법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경우	법 제72조 제1항제2호	300
라.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4조의5제4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경우	법 제72조 제1항제2호	150
마. 법 제14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모집인의 불법행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1항제3호	500
바. 법 제14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모집인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1항제4호	150
사. 법인인 자가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경우	법 제72조 제1항제4호의2	300
아.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경우	법 제72조 제1항제4호의2	150
자. 법 제16조의5를 위반하여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1항제4호의2	500
차. 법인인 자가 법 제19조제3항 제7항 또는 제19조의2를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제1항제5호	500
카.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19조제3항·제7항 또는 제19조의2를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제1항제5호	250
타. 법 제2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2조 제1항제5호의2	300
파. 법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1항제6호	500

하.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1항제7호	300
거. 법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1항제7호	150
니. 법 제5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법 제72조 제1항제8호	500
더. 법 제5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법 제72조 제1항제9호	500
러. 법인인 자가 법 제50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1항제10호	300
머. 법인이 아닌 자가 법 제50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1항제10호	150
버. 법 제50조의9제1항·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2조 제1항제10호의2	250
서.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72조 제1항제10호의3	300
어. 법 제54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72조 제1항제11호 법 제72조 제1항제11호	150 300
저. 법 제54조의2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1항제12호	150
처. 법 제54조의2에 따른 공시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72조 제1항제12호	500
커. 법 제54조의3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된 경우	법 제72조 제1항제13호	300
터. 법 제54조의3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된 경우	법 제72조 제1항제13호	50
퍼. 법 제55조를 위반하여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2조 제1항제14호	500

<신 설>

2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변경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의 명칭
2. 등록을 변경하려는 내용
3. 등록을 변경하려는 사유

제7조의4(가맹점모집인의 준수사항)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는 모집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모집하려는 신용카드가맹점(이하“가맹점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자신이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자임을 알릴 것
2. 가맹점신청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할 것
3. 가맹점신청인에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약관과 법 제18조 제4호의 사항을 설명할 것
4. 법 제27조의4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

드 단말기를 설치할 것

5. 가맹점을 모집할 때 알게 된 가맹점신청인의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할 것
 6. 제3자로 하여금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을 대신하게 하거나 위탁하지 아니할 것
 7.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보상금등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

제7조의5(가맹점모집인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신 설>

는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여야 한다.

② 부가통신업자는 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모집인은 정기적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을 방문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의 영업여부 및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신용카드업자 또는 부가통신업자는 가맹점모집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6(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요건 등) 법 제27조의 제3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협회의 장은 부가통신업자 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등록한 신용카드 단말기에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제19조의15(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 -----

<신 설>

제19조의15(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 법 제5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제5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6.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 ~ 6. (현행과 같음)

7.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8. 제6조의19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19조의18(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 법 제54조의4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의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의 제출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4항에서 정하는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9조의19(신용정보보호)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가 법 제54조의5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거

